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일 리 두 기

- ◆ 이 자료는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안내하고자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규정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이 자료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이 예시에 의하여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번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의도지원단 (02-780-2684)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 ⇒ ‘선거법’ 또는 ‘법’으로 표기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으로 표기
 - ‘제58조’ ⇒ ‘§58’로 표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로 표기
 - ‘대통령선거’ ⇒ ‘대선’으로 표기

차례

I.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
1.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 3	
2. 선거사무관계자 / 7	
3.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12	
4. 자동차·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 24	
5.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31	
6.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39	
7.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47	
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53	
9. 그 밖의 선거운동 / 57	
II. 기간별 주요 제한·금지행위	67
1. 상시 제한·금지행위 / 69	
2.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행위 / 96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행위 / 108	
4.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행위 / 113	
5.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행위 / 118	
6.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행위 / 141	
□ 부록 :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표	143



I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3
2. 선거사무관계자	7
3.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12
4. 자동차 · 확장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24
5. 대담 ·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31
6.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39
7.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47
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53
9. 그 밖의 선거운동	57





I.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법 §61·§63)

① 법규요약

□ 설 치

- 설치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 설 치 수
 - 선거사무소 : 전국에 1개소
 - 선거연락소 :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마다 1개소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 위생영업소 안에 들 수 없음.
 - ↳ ‘식품접객영업소’란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을, ‘공중 위생영업소’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을 말함.
 -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연락소의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있는 때에는 그 다른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음.
-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설치·변경신고

- 신고시기 : 설치·변경한 때 지체없이
- 신고권자 및 신고처
 - 선거사무소 : 중앙당 또는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 서면신고
 - 시·도선거연락소 : 중앙당, 시·도당, 후보자·선거사무장이 선거연락소 소재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서면신고
 - 구·시·군선거연락소 : 중앙당, 시·도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시·도 선거연락소장,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선거연락소 소재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신고
- 예비후보자가 설치·신고한 선거사무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개소식 (법 §112②2호카목)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개소식·간관계시식·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3,000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000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법 §112②1호마목)

2 주요선례

판 단 기 준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이하 '1.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소'라 함)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선거사무소 기능·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할 수 있는 사례

- 주택이나 아파트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출판사 사무실과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위 (1995. 5. 19. 회답)
- 차량·천막·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킨 상태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2000. 4. 7. 회답)
 - ⇒ 다만, 고정된 후에는 이동시킬 수 없음.
-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다른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옥상에 현수막 설치를 위한 게시대와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되나, 조명장치 설치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보전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에 LED 전광판을 간판등으로 설치하여 문자나 정당마크 등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표출되도록 하는 행위
 - ⇒ 다만,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지 않아야 함.
-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커피자동판매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이 경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지출함.
-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참석자가 일상적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안(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에서 간단한 음료수를 가져온 경우 이를 받는 행위(이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음)
- 개소식을 축하해 주는 의례적인 범위의 화환을 지인으로부터 받는 행위
 - ⇒ 다만, 화환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게재되어서는 아니됨.
-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잡무처리(차 대접, 청소 등)를 담당하는 노무자를 두고 직무제공에 대한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

⇒ 이 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함. 다만, 선거사무소 등에서 서류 정리, 비품관리, 회계업무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 부동산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서신을 작성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동창생 등이 위 사무실을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상대로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제주지방법원 1998. 10. 14. 선고 98고합127)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그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는 한편 앞으로의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하는 행위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675)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입구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윗옷, 모자, 어깨띠를 착용한 홍보마네킹을 설치하거나 홍보마네킹에 녹음된 소리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12. 3. 15. 회답)
- 선거사무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주차장, 인근 건물이나 식당에서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2. 선거사무관계자 (법 §62·§63·§135)

1 법규요약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함.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¹⁾을 둘 수 있음.
 -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각각 회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함.
- 선거사무원수

구 분	선거사무원수
선거사무소	시·도수의 6배수(102명) 이내
시·도 선거연락소	해당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수(그 구·시·군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읍·면·동수 이내
구·시·군 선거연락소	해당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안의 읍·면·동수 이내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된 경우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실비 이외에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장애인 후보자에 한함)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중앙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1) 선거법 제1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함.

- 2이상 정당·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음.
 - ⇒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집 가능

□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 신고권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고대상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이하 '선거사무장등'이라 함),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함)
-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한 때 지체없이
 - ⇒ 예비후보자 때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고를 한 경우 후보자등록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고방법 :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등을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선거사무관계자의 교체인원수 및 표지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임.
- 관할 선관위에 표지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의 교부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 포함)은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 표지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 후보자의 배우자등도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표지 분실시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 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보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 다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 포함)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수당·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수당과 실비의 금액(숙박료는 지급할 수 없음)
 -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시·도선거연락소장 및 시·도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수당 7만원 이내, 식비 2만 5천원 이내, 일비 2만원 이내(철도·항공운임 등 교통비실비 별도. 이하 이 표에서 같음)
 - 구·시·군선거연락소장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수당 5만원 이내, 식비 2만원 이내, 일비 2만원 이내
 -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 수당 3만원 이내, 식비 2만원 이내, 일비 2만원 이내

② 주요선례

판 단 기 준

- 선관위가 발행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를 위조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경우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에 위반됨.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10. 17. 선고 2002고합371)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이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으로 선임된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실비만 지급할 수 있음. (1997. 11. 27, 2004. 3. 31. 회답)
 - ⇒ 정당의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므로 선거 사무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회 인턴보좌관이나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포함됨.

-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곧바로 후보등록을 한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을 겸하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신분시 선임·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선거일까지 계속 고용할 경우 재신고해야 함.
 - ⇒ 다만, 회계책임자는 재신고하지 않아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봄.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단체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후보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정당·후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2004. 3. 25. 회답)
-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나 정당의 지원 없이 자신의 실비를 공평하게 각출하여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취사를 하는 행위
 - ⇒ 다만, 공동취사를 명목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위반됨.
-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보좌관·비서관·비서 제외) 또는 국회의원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을 선거사무원이나 회계책임자로 선임할 경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신용불량자인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계좌입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당·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 ⇒ 이 경우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하는 가족 등 제3자의 예금계좌로 수당 등을 입금하여야 함.

-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거나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지정된 1인이 되는 경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쳤을 경우 후보자측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치료비와 위로비를 지급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 안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가능

3.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60의3·§64·§65·§66·§93)

1 법규 요약

1) 후보자 명함 (법 §60의3·§93①)

○ 주체별 배부방법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각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1인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후보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1인을 제외하고는 관할 구·시·군선거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패용하고 명함을 배부하여야 함.

○ 배부시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만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명함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금지장소 : 호별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는 없음.

⇒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를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배부할 수 없음.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그 직책 등을 표시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할 수 있음.

2) 선거벽보 (법 §64)

- 작성·제출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 종수·지질·규격·수량
 - 종수·지질 : 1종, 100g/m²이내의 종이
 - 규격 등 : 길이 76cm 너비 52cm로 길이를 상하로 작성
 - 첩 부 : 읍·면·동 단위로 다음의 인구수 비율을 한도로 첩부

- 읍 및 동 : 인구 1천인에 1매
- 인구 5천인을 넘는 면 : 50매 + 인구 5천인을 넘는 매 1천인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 인구 5천인을 넘지 않는 면 : 인구 100인에 1매
- ※ 상기 산출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 5매로 함.

- 보완첩부용 : 인구수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
 - ⇒ 후보자는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완첩부용 수량 범위내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함.

○ 게재내용

- 후보자만의 사진(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 제외)·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등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출시기 등

• 제출시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11. 29.)까지

⇒ 법 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

⇒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 제출처 :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

○ 허위사실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이하 책자형·전단형·접자형 선거공보에서도 같음)

• 이의제기 :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한 허위사실 게재 시

• 제기방법 :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제기

• 처리절차 :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공고하여야 함.

○ 비방내용 게재 시 처리(이하 책자형·전단형·접자형 선거공보에서도 같음)

중앙선관위가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투표구마다 공고문 5매를 첩부하되,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추가로 1매를 첩부함.

○ 접수거부 사유 및 업무의 계속 진행

• 종수·규격·수량·제출기한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음.

• 이의제기와 고발은 선거벽보의 제출·접수·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선거공보 (법 §65)

책자형 선거공보

○ 작성·제출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 종수·규격 등

• 종 수 : 1종

- 면 수 : 16면 이내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작성수량 :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선상 투표자는 제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

○ 게재내용

- 앞면에 명칭(‘책자형 선거공보’)·선거명 게재
-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함.

- 재산상황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총액
- 병역사항 :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질병명 또는 심신장애 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건별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 실적은 제외)
- 전과기록 : 금고 이상 죄명과 그 형(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및 확정일자(실효된 형 포함)
-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 ⇒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제출(제출하여야 할 매수에서 제출한 매수를 뺀 수)하여야 함.
 - ⇒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제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

○ 제출 및 발송시기 (접전형 선거공보도 동일)

구 분	제 출	발 송
부재자용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12. 2) 까지 ↳법 §51에 따른 추가등록시	부재자투표용지발송 시(12. 10. 까지) 동봉 발송
매세대용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까지	제출마감일후 3일(12. 5.)까지

○ 접수 거부 사유

-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하는 경우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 작성·제출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 종수·규격 및 작성방법 등

- 종 수 : 1종
- 면 수 : 1매(양면)
- 규 격 : 길이 38cm 너비 27cm 이내 또는 길이 54cm 너비 19cm 이내
- 작성수량 :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

○ 게재내용

- 앞면에 명칭(‘전단형 선거공보’)·선거명 게재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제출 및 발송시기

- 제 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12. 6.)까지
- 발 송 : 투표안내문 발송(12. 12.까지) 시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전단형선거공보와 함께 추가 발송하여야 함.

점자형 선거공보

- 작성·제출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 종수·규격 및 작성방법 등
 - 종 수 : 1종
 - 면 수 :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면수 이내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작성수량 : 구·시·군의 장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통보한 시각장애선거인수 이내
- 게재내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 ⇒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2면에 게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 3, 4면에 계속하여 게재 가능
 - 앞면에 선거명·후보자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

4) 선거공약서 (법 §66)

- 작성·제출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
- 종수·규격 및 작성방법 등
 - 종 수 : 1종
 - 면 수 : 32면 이내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작성수량 :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함.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 이내에서만 게재 가능함.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뒷면에는 근거('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배부방법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
- ⇒ 다만, 우편발송(점자형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특정 장소에 비치·살포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음.

○ 신고·제출

- 신고시기 : 배부일 전일까지
- 신고처 : 중앙선관위
- 제출내용 : 선거공약서 2부를 첨부하여 서면신고

○ 선거공약서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 규칙별지 '제17호의2 서식의(다)'에 의한 발송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시행령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는 선거공약서를 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 ⇒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2 주요선례

1) 후보자 명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위하여 AR기술²⁾이 적용된 마커와 바코드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등에 인쇄하여 후보자의 약력·경력 그 밖에 선거공약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011. 8. 25. 회답)
- 선거운동용 명함에 QR코드를 이용하여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011. 6. 28. 회답)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라고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2007. 5. 18. 회답)
 - ⇒ 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구성원도 그 직책 등(후보자의 사진이나 선거 구호 등 선전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기재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할 수 있음.
-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당로고, 정당 명칭, 선거대책기구에서의 직위를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2008. 3. 3.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대통령선거후보자 팬클럽의 대표자가 “OO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천지부장 홍길동”, “OO사랑 인천지부장 홍길동”, “www.OOlove.org 인천지부장 홍길동” 등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2007. 1. 19. 회답)

2) 스마트폰 3차원 증강현실(이하 ‘AR기술’이라 함)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모바일 기술로서 선거용 홍보물 등에 모바일 AR기술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즉석 3차원 선거 홍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볼 수 있게 함.

- 유세차량에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동안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로 지정된 1인이 유세차량 주변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2008. 4. 2. 회답)
-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인천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고합622)
- 후보자의 명함을 호별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는 행위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더3062)
- 선거구내 아파트 계단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8. 9. 선고 2012고합245)
- 후원회 안내장을 발송함에 있어 후원회지정권자의 명함을 동봉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2) 선거벽보

판 단 기 준

- 선거공보에 ‘□□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이사’라 기재한 것은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위 과정을 수료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다른 학력들과 별도로 경력과 기재되어 있고, 수료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함.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수209)
-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명을 그대로 기재함이 원칙이나, ‘리, 류’와 같이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하여 온 경우라면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이(리)○○, 유○○(류○○)” 등과 같이 병기하거나 본명과 예명·필명 등을 병기할 수 있음. (2006. 4. 18.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사진 배경으로 새들이 비상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1995. 4. 26. 회답)

-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1995. 5. 9. 회답)
- 선거벽보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뒷모습 사진이나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000. 3. 28. 회답)
- 선거벽보 등 경력란에 예비장관, 예비감사원장,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2000. 3. 29, 2000. 4. 9. 회답)
- 선거벽보에 후보자 본인만의 다른 사진 2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2006. 5. 10. 회답)
- 당선무효판결 이전의 의원직 보유기간을 경력으로 기재하는 행위 (2010. 3. 10. 회답)
- 육군 보병학교 졸업을 군복무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2001. 7. 30. 회답)
- 선거벽보의 경력란에 '○○당 정치대학원 제○기 수료, ○○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 등 정당 내부의 강좌 등 이수내역을 게재하는 행위 (2006. 4. 7. 회답)
 - ⇒ 다만, 정당 내부강좌를 학력란에 게재하는 등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됨.
- 선거벽보·선거공보에 명예졸업 사실을 수학기간과 함께 게재[예 : ○○대학교 ○○과 3년 제적(명예졸업)]하는 행위 (2005. 12. 29. 회답)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행위 (2006. 3. 6. 회답)
- 후보자의 학력이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이라고 기재하는 행위 (2007. 11. 26. 회답)
-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기재하는 행위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학교를 졸업·중퇴하였다도 고등학교 졸업을 최종학력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선거벽보 등 홍보물에 게재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후보자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여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010. 4. 30.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벽보에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000. 3. 28. 회답)
- 선거벽보에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2006. 5. 3. 회답)
 - ⇒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 선거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음.

3) 선거공보

판 단 기 준

- 규격과 면수이내에서 편철 등의 방법으로 제책하거나 병풍형태로 접어서 제출하는 것은 무방함. 접어서 제출하는 경우 면과 면사이에 내용이 걸쳐 있더라도 무방하나, 길이와 너비면을 각각 접어서 작성하는 등 책자형 형태를 벗어난 방법으로 작성할 수는 없음. (1996. 3. 8. 회답)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게재하되 그 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면에 연이어 게재할 수 있으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홍보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2006. 3. 30. 회답)
-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공보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면 후보자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됨.

할 수 있는 사례

- 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의 병역사항, 재산세·소득세 납부실적, 전과 기록을 선거공보에 사실대로 비교하여 게재하는 행위 (2000. 4. 1. 회답)
-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자가 선거공보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 및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1995. 4. 26. 회답)
- 점자가 혼용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2002. 4. 22. 회답)
- 시각장애인에게 발송하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행위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할 수 없는 사례

- 선관위에 제출하고 남은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임의로 배부하는 행위 (서울고등법원 1995. 12. 29. 선고 95노2832)
- 인쇄가 잘못되어 보관하던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대전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2고합247)
- 타인의 얼굴을 대통령의 얼굴사진으로 교체하여 대통령과 같이 촬영한 것처럼 합성기법으로 편집하여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14)
- 선거공보에 유사학력인 '○○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하는 행위 (부산지방법원 2000. 9. 22. 선고 2000고합544)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란에 배우자의 체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6. 8. 4. 선고 2006고합72)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란에 일부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형은 기재하였으나 죄명과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전주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고합92)

4. 자동차·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 §79·§91·§102)

1 법규요약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법 §79·§102)

- 주 체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표에서 '후보자등'이라 함),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내 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연설·대담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 다만,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자동차와 확성장치 수량 등

구 분		자동차	확성장치		녹 화 기 화면규격
			차 량 부착용	휴대용	
후보자용	전 국	1대	1조	1조	제한없음
연락소용	시 · 도	각 1대	1조	1조	10㎡이내
	구·시·군	각 1대	1조	1조	5㎡이내

※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경우 하나의 구·시·군이 20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대·1조를 사용할 수 있음.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 등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 및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을 사용함에 있어 1개를 넘을 수 없음.
 - 자동차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사진을 붙일 수 있음.
- 후보자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³⁾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연설·대담차량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음.
- 연설금지장소 (법 §8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금지되지 않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2)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선박 (법 §91)

- 주 체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3) 후보자등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말함.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수 량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5척 이내
 - ⇒ 관할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함.
- 내 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자동차마다 각 5매(선박은 각 10매)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음.
 -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제외한 후보자사진 등은 부착 불가

2] 주요선례

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판 단 기 준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다른 후보자의 연설·대담장과 거리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음상 방해뿐 아니라 그 외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연설·대담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1995. 1. 13.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집회 또는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1997. 12. 29. 회답)
- 확장나발은 그 형태가 나발모양이든 사각형 모양이든지를 불문하며, 일반오디오기기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음. (2000. 3. 29. 회답)
-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됨.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민사·형사책임 문제에 대하여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님. (2007. 12. 5. 회답)

- 후보자등(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그를 지정한 후보자등이 없는 때에도 연설·대담이 가능함.
- ⇒ 후보자등으로부터 지정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인원수 제한이나 신고의무도 없음.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크기나 톤수, 확장장치의 출력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장장치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후보자의 사진 부착 외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견·정책·선전구호 등을 그림(캐리커처 포함)이나 문자에 의하여 게재하는 행위 (1996. 3. 21.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홍보물을 라이트 패널(아크릴 도광판을 말함)을 사용하여 부착하는 행위 (2002. 10. 16.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전기·전광에 의한 방법으로 설비를 하는 행위 (1996. 3. 21. 회답)
- 애드빔·비디오전광판·점보트론·멀티비전 모니터·전광판·영사기를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화기로 사용하는 행위 (1995. 2. 24, 1995. 4. 7, 2000. 1. 8, 2004. 4. 7. 회답)
- 녹화기가 3면(방향)의 화면으로 연결된 경우 그 화면을 모두 합한 규격을 법정규격 이내에서 사용하는 행위 (2004. 4. 13. 회답)
- 후보자가 참여한 활동내용을 녹화물로 제작하여 녹화기로 방영하는 행위 (2004. 3. 14.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화기로 후보자 영상물을 방영할 경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화통역을 방영하거나, 후보자가 연설하는 경우 수화통역사가 함께 탑승해서 수화통역하는 행위 (2008. 3. 26.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 본인의 사진 외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006. 5. 13. 회답)
- 후보자의 연설·대담내용을 무궁화 인공위성의 ‘다지점 중계통신망’(skylife 위성방송과는 무관함)을 이용하여 후보자용 연설·대담차량과 시·도선거연락소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용 녹음기·녹화기를 통하여 동시에 생중계하는 행위 (2007. 10. 15.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법 제105조에서의 금지되지 않는 연호행위, 로고송을 따라 부르거나, 대가를 주어 동원하지 않은 일반선거구민이나 당원이 자발적으로 그 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함께 하는 행위 (2004. 4. 8. 회답)
- 이동식 앰프스피커를 차량부착용 또는 휴대용 확장장치로 사용하는 행위 (2006. 4. 20. 회답)
- 홍보영상 배경음악 또는 로고송 등으로 개사곡이 아닌 기존의 음원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2009. 4. 21. 회답)
- 연설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또는 후보자의 정견을 홍보하기 위한 배경화면으로 전직 대통령의 추모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 (2010. 5. 18.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문자 LED(Light Emitting Diode)을 설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2008. 2. 27.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윗옷, 모자, 어깨띠를 착용한 홍보마케팅을 설치하는 행위 (2012. 3. 15. 회답)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일정을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행위
 - ⇒ 다만, 자동 동보통신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제한됨.

할 수 없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의 비방 등 다른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1996. 3. 21. 회답)
-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 (1998. 5. 13.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통하여 상대 후보자의 전과사실이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 언론보도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1998. 5. 13. 회답)
-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시낭송 형식 등)로 녹음물을 방송하는 행위 (2006. 5. 17. 회답)
 - ⇒ 다만, 후보자가 말하는 기능을 잃거나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아닌 자가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거나 율동을 하는 내용의 녹화물을 방영하는 행위 (2010. 4. 22. 회답)
-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DDR(Dance Dance Revolution)을 선거구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2000. 3. 7.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춤추는 인형을 제작·사용하면서 애드벌룬·기구류의 형태에 이르는 행위 (2000. 3. 13.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설치된 첨단유세로봇이 효과음·연설 등의 소리를 내거나 연설·대담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인사를 하는 등의 동작을 하는 행위 (2004. 3. 25.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과 녹화기전용차량을 별도 사용할 경우 녹화기 차량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첨부·게시하는 행위 (2004. 4. 7. 회답)
-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음량이 작은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부착용 확장장치나 휴대용 확장장치외의 별도의 확장장치를 녹음기·녹화기에 설치하는 행위 (2006. 5. 15. 회답)

- 후보자등이 녹화기를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2012. 3. 16.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한 사람에게 연설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다만,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법정 범위내에서 수당·실비는 제공할 수 있음.

2)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선박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91조제4항에 의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2008. 7. 3. 회답)
⇒ 다만,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법 제91조에 의한 자동차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008. 3. 18. 회답)
- 법 제91조제4항에 의한 선박을 영업중인 여객선으로 사용하는 행위 (2010. 3. 11. 회답)

5.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 §81·§82·§82의2)

1 법규요약

1)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법 §81)

○ 개최주체 : 단 체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는 대담·토론회⁴⁾를 개최할 수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개최시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

○ 개최신고

- 개최일전 2일까지 중앙선관위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
- 모든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 후보자 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 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 이상 후보자씩 순번에

4) '대담'이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토론'이란 2인 이상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함.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함.

○ 장소표지 : 개최장소에 2매 이내의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

○ 유의사항

- 모든 후보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옥내에서 개최하되, 그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첩부할 수 없음.
-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 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함.
- 사회자는 참석한 후보자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나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 대담·토론회 개최비용은 주최하는 단체가 부담하여야 함.

2)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법 §82)

○ 주 체 : 언론기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⁵⁾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언론사

5)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말함.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 다만,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11. 12. 19.~2012. 11. 26.)까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 전일까지 중앙선거위(지역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위원회 포함)에 방송일시 등을 통보하여야 함.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신고의무 없음)

○ 초청대상자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⁶⁾

○ 초청 및 진행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 비용부담 등

-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법 §82의2)

- 주 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횟 수 :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6)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함.

○ 초청 대상후보자

-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선·비례대표국선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⁷⁾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대담·토론회 개최

-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하게 하고,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 포함)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함.

2 주요선례

1)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상 지지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천명하는 행위 (2002. 5. 23. 회답)

7) “평균”이란 수의 개수나 양의 크고 작은 차이 없이 고르게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1개의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라도 다른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면 그 조사 결과 지지율이 평균이 될 것임. (2005. 4. 20. 회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중계방송하게 하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 대학교 학생회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012. 3. 30. 회답)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지회 포함)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만,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한국자유총연맹이 발행하는 '자유공론'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2. 5. 6. 회답)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7. 4. 5. 회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선거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시 상영하는 행위 (1995. 4. 6. 회답)
- 후보자 초청 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1996. 4. 3. 회답)
- 「정치자금법」 상의 후원회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4. 10. 16. 회답)

2)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판 단 기 준

-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방송·방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로 봄. (1997. 11. 19. 회답)
- 법 제82조제1항 단서규정은 대담·토론회가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나 재량행사의 여지가 없음. (헌법재판소 2003. 2. 27.결정 2002헌마106)
- 단순한 전화·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인터넷 문자 통신, 동행 취재는 법 제82조의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화상대담은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 제82조의 대담에 해당됨. (2006. 12. 21. 회답)
-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므로, 초청받은 후보자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대담·토론회를 활성화 하고 선거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 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할 것임. (헌법재판소 1999. 1. 28.결정 98헌마172)
- ⇒ 언론기관이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 하는 때에는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초청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음. (2006. 4. 20.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1995. 2. 24. 회답)
- 교육방송이 법 제82조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1997. 11. 12. 회답)

- 종합유선방송국 등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개최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1997. 11. 19. 회답)
-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인 티유미디어가 법 제82조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2007. 7. 16. 회답)
- 인터넷언론사가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 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토마토 TV(케이블방송)의 자회사인 '뉴스토마토'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종합유선방송사 또는 그들이 연합하여 법 제82조에 따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 (2007. 11. 14. 회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7. 10. 29. 회답)
- 언론기관이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분야의 쟁점이 심도있게 다루어지도록 그 언론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2007. 10. 8. 회답)
- 위성방송사업자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질문을 공정하게 수집·방송하거나 사전에 제작한 후보자 인터뷰 영상을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방영하는 행위 (2007. 11. 25.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2007. 11. 25. 회답)
-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2007. 11. 25. 회답)
- 인터넷 손바닥TV(손바닥TV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주체로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012. 3. 8. 회답)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판 단 기 준

- 방송매체에 의한 합동토론회는 종래 일방적인 연설회가 의견전달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자질의 상호 대비와 검증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점을 시정하여 실시간 선거인의 면전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상대 후보와의 토론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대비·검증하는 새로운 선거정보제공 방식으로 채택된 것임. (부산고등법원 2005. 8. 17.선고 2005노218)
-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으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의 100분의 5를 요구하고 있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입법목적은, 선거 운동수단인 선거방송토론회의 자격을 후보자의 지지율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헌법재판소 2009. 3. 26.결정 2007헌마 1327)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 6명중 법정요건이 되는 4명만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후, 대담·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 2명에게는 각각 10분이내의 범위에서 방송연설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행위 (2004. 4. 5.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대담·토론회 초청을 받은 후보자가 불참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 불참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함.

6.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 §69·§70·§71·§72·§73·§74)

① 법규요약

1) 신문광고 (법 §69)

- 주 체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
- 매 체 :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함)
- 시 기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11. 27.~12. 17.)까지
-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봄.
 -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1회로 봄.
- 광고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 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색도 및 규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광고근거(「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함.
- 광고절차
 - 신문광고 전에 중앙선관위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 게재
 - 일간신문 경영·관리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음.

2) 방송광고 (법 §70)

- 주 체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
- 매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횟 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음.
 - 횟수계산은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시설의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광고내용 및 방송일시 통보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방송시설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내용 등을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함.

3)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법 §71)

- 주 체 : 후보자 및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횟 수 : 후보자 및 연설원이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이내
 - 연설시간은 1회 20분이내
 -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함.
- 내 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방송연설절차
 - 후보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11. 29.)까지(추가 등록의 경우 추가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
 -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 중앙선관위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함.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 방송연설제작 등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는 경우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됨.
-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함.
- 연설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4)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법 §72)

○ 주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횟 수 : 제한없음.

○ 내 용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

⇒ 이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다만,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방송연설절차 등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 등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함.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 연설 방송시에는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5) 경력방송 (법 §73)

○ 주 체 : 한국방송공사 (KBS)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횟 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8회 이상 (매회 2분이내)
- 내 용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직업 기타 주요 경력
- 방송절차 등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11. 26.)까지(추가등록의 경우 추가등록과 동시에) 경력방송 원고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
 - ⇒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봄.
 - 후보자가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송부함.
 -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300자(텔레비전 방송용은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음. 텔레비전 방송용원고 자수에는 구두점 기타 문장부호도 자수에 산입함.
 - 한국방송공사가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6)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법 §74)

- 주 체 :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횟 수 : 제한없음.
- 방송절차 등
 -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 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 등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함.

② 주요선례

1) 신문광고

판 단 기 준

- 신문광고에 있어 당일 신문에 광고문이 단절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광고(예를 들면, 2페이지에 걸친 양 전면을 펼친 광고)는 1회로 봄. (2010. 5. 3. 회답)
- 신문광고를 함에 있어 그 내용중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글, 그림, 말 등)를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다만, 직업적으로 또는 단순한 모델로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무방함. (1992. 11. 20. 의결)
- 신문광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기회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그에 따라 신문사가 반드시 광고를 게재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어서 신문사의 게재거부행위가 곧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음. (1992. 12. 8.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중앙당의 대표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신문 또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해당 무가지신문이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인 경우 그 무가지신문에 광고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향우회, 동문회, 각종 봉사단체 등이 후보자를 위하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2) 방송광고

할 수 있는 사례

- 방송광고에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장면을 삽입하는 행위 (2004. 4. 5. 회답)
- 방송광고에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방영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법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IPTV의 VOD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행위 (2010. 5. 12. 회답)
- 종합편성채널(JTBC, MBN, TV조선, 채널A)에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하는 행위 (2012. 2. 8. 회답)
 - ⇒ 종합편성채널은 법 제70조의 방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판 단 기 준

- 형사피고인에게 TV·라디오 연설내용을 시청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이를 실시할 경우에는 모든 정당·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1992. 12. 2. 회답)
- 방송연설내용중에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 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사가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없을 것이며, 위법의 책임은 연설을 한 후보자등이 질 것이나 방송사로서는 그 사실을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임. (1995. 4. 26.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중에 해당 방송사에서 방송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다른 방송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저장하여 두고 다시보기 또는 주문형 비디오(VOD)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001. 12. 26. 회답)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는 행위 (2001. 12. 26. 회답)
 - ⇒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때에는 법 제230조제1항제4호에 위반됨.
- 법 제71조 및 제137조의2에 따라 방송연설을 실시하는 경우 앞뒤에 시그널 음악 또는 배경음악(클래식 음악 등 가사가 없는 일반 경음악) 등을 사용하는 행위 (2007. 10. 30. 회답)
-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가사가 없는 배경음악에 연설 내용을 이르면, 랩송 형태로 연설을 하면서 배경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 (2008. 1. 14. 회답)
- 후보자가 평생 막일로 고생해서 군살이 박힌 자기의 손만을 클로즈업해 비춰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라 방영하는 행위 (2008. 1. 14. 회답)
- 후보자가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연설을 1분 동안만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라 방송하는 행위 (2008. 1. 14. 회답)
 - ⇒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71조제7항·제10항에 따라 선거구선관위에 그 방송 광고 또는 방송연설의 일시·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통보·신청·신고하여야 함.

할 수 없는 사례

- 선관위에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송연설을 한 행위 (대법원 2010. 11. 25. 2008두1078 판결)

- 1회의 방송연설에서 2인 이상 연설원이 출연하여 연설하는 행위 (2007. 11. 14. 회답)
- 후보자의 연설모습이 없는 가운데 그 연설의 전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방영하는 행위 (2008. 1. 14. 회답)
- 방송연설에서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또는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이 아닌 외부 업체(외부 프로덕션 중계차)가 제작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2008. 1. 14. 회답)

4)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판 단 기 준

- 중계유선방송은 법 제72조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을 주관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 아님. (1998. 5. 19. 회답)

5) 경력방송

할 수 있는 사례

- 경력방송 원고에 정당의 명칭을 약칭으로 게재하여 사용하는 행위 (1996. 2. 28. 회답)
- 경력방송 원고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후보자의 경력으로 게재하는 행위 (2000. 3. 27. 회답)

7.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61·§67)

1 법규요약

1)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간판·현판·현수막 (법 §61)

- 설치주체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설치시기 : 후보자등록후부터 설치·게시 가능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등록 후 게시한 간판 등 사용 가능
- 규격·수량·제한사항 등
 - 수량·규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 ⇒ 게재내용은 제한이 없으나, 비방·허위사실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게재 불가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정당의 당사 게시 간판·현판·현수막 (법 §90·§145)

- 설치주체 : 정당(중앙당, 시·도당)
- 게재내용
 - 평상시에는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대표자 성명을 게재할 수 있음.
 - ⇒ 다만,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선거기간 중에는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

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 게시방법 등

- 수량·규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정당의 사무소 외벽면 또는 옥상에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 해당 당사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기존의 중앙당 당사가 협소하여 당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당 사무소와 가까운 거리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당법 제14조에 따라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임. (2005. 3. 31. 회담)

□ **정당선거사무소 게시 간판·현판·현수막** (법 §61의2)

○ 설치주체 : 정당(중앙당, 시·도당)

○ 설치단위 :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 설치기간 : 선거일전 24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012. 4. 23. ~ 2013. 1. 18.)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설치·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는 별도의 신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게재내용

-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게시방법 등

- 수량·규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 해당 당사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사무소 게시 간판 (법 §145)

○ 설치시기

- 선거대책기구 : 선거대책기구 구성기간 중

⇒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 및 각 시·도당에 둘 수 있음.

- 후원회 : 후원회 운영기간 중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후원회는 전국에 1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음.

○ 게재내용 등

- 간판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해당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2) 거리게시용 현수막 (법 §67)

- 게시주체 : 후보자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

- 설치시기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종료시까지 (11. 27. ~ 12. 19.)

⇒ 이동 게시는 무방하나, 선거일에는 이동 게시할 수 없음.

- 규격·재질 : 10m² 이내 천으로 제작

- 게시수량 : 읍·면·동마다 1매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게시방법 등

- 관할 구·시·군선거위원회가 미리 교부한 표지를 첨부하여 게시하되, 훼손·오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첨부·게시함.

-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음.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

2] 주요선례

1)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간판·현판·현수막

판 단 기 준

- 현수막 등의 규격·색도·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고, 횡수에 관계없이 게시된 현수막 등은 교체할 수 있음. (다만,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됨)

할 수 있는 사례

-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어 교체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만,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됨)
-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010. 2. 3. 회답)
 - ⇒ 다만, 간판이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 법 제100조에 위반됨.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포함)가 설치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해당 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 설치 포함)으로 설치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포함)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정보고서의 일부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008. 1. 30. 회답)
 - ⇒ 실제 함께 활동하였거나 원본 사진이 있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 사진인 경우 게재 불가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포함) 외벽면 현수막에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켜 게재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2010. 4. 26, 2008. 2. 18. 회답)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포함)의 입구·외벽면·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 및 규칙 제27조에서 정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의 사진 외에 홍보물을 첩부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포함) 내부에는 선거구호·활동사진 등을 첩부할 수 있음.

2) 거리게시용 현수막

판 단 기 준

- 규격은 면적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형태는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 등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현수막에 후보자의 기호·성명·소속정당명을 두 번씩 기재하는 행위 (1978. 12. 10. 회답)
- 현수막을 장소를 옮겨 게시하는 행위 (1994. 12. 30. 회답)
 - ⇒ 다만,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는 없고, 또한 선거일에는 현수막을 이동 게시할 수 없음.
-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1995. 4. 25. 회답)
- 앞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같은 크기, 같은 도안, 같은 내용으로 양면 현수막을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로 누벼서 한 장의 현수막처럼 사용하는 행위 (2008. 3. 19. 회답)
- 현수막에 후보자와 타인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행위 (2008. 4. 1. 회답)
- 현수막의 규격 범위안에서 프레임을 만들어 일정한 장소에 옮길 수 없도록 고정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2009. 2. 24. 회답)
- 재래시장 내 천정에 고정시킨 후 상하 움직이며 노출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2010. 4. 7.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2006. 5. 13. 회답)
- 현수막에 건전지에 의한 발광기능을 추가해서 제작·게시하는 행위 (2006. 3. 22. 회답)
- 필름에 전류를 흘려서 발광하여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제작·게시하는 행위 (2007. 11. 23. 회답)
- 현수막을 천에 PVC 등 비닐재질을 덧붙여 제작·게시하는 행위 (2008. 3. 26. 회답)
- 1개의 읍·면·동에 2매 이상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부산지방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고합586)

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59·§82의4·§82의5·§82의7)

1 법규요약

1) 전 화 (법 §82의4)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 전화 이용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법 §109)

2) 인터넷광고 (법 §82의7)

- 주 체 : 후보자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
-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내 용 :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 ⇒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함.

[예시] “선거광고·[선거운동 내용 기재] ○○○당(○○○후보자)”

- 규격·횟수 등
 - 인터넷광고의 형식·크기(용량)·규격은 제한없음.
 - 광고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59억천백만원)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

상기 외에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책자 90~103쪽 참조)

2 주요선례

1) 전 화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나 정당의 당사가 아닌 기존의 사무실이나 가정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로이 전화를 가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유사기관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2010. 3. 4. 회답)
-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안녕하십니까? 연기자 ○○○입니다. □□□후보자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등)를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2010. 5. 14. 회답)
- 후보자가 선거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 (2010. 4. 23.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송화자가 직접 통화함이 없이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행위 (2008. 3. 11. 회답)
-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수신동의를 얻어 제3자(성우, 정치인 등)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 (2010. 4. 23. 회답)

2) 인터넷광고

판 단 기 준

- 인터넷광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배너광고·검색광고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함. (2006. 1. 18. 회답)
- 일반일간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상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됨. (2006. 1. 18. 회답)
- 후보자·정당이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하며, 인터넷광고를 하려는 후보자 또는 정당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2010. 5. 4.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2010. 4. 16. 회답)
- 디지털 조선일보, 조인스닷컴, 연합뉴스,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네이트온에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2005. 10. 5, 2010. 4. 28. 회답)
-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검색으로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키워드광고(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2006. 4. 18. 회답)
- 정당의 인터넷 광고를 별도의 뉴스레터(기사와 광고가 함께 게재된 형태)로 편집하여 뉴스레터의 수신을 허용한 네티즌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2006. 5. 1. 회답)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기사를 동일하게 보여 주는 모바일애플리케이션에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2010. 4. 28.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2000. 3. 6. 회답)
-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하나TV, MBC의 인터넷 손바닥 TV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2007. 11. 30, 2012. 3. 8. 회답)
- 후보자 및 정당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2012. 1. 13. 의결)

9. 그 밖의 선거운동 (법 §62·§68·§105·§106)

1 법규요약

1) 선거운동 자원봉사자⁸⁾의 선거운동 (법 §62)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선거운동방법 (예시)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발송·전자우편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가능함. 다만,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는 후보자·예비후보자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법 §79)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법 §82의4)
-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법 §93)
-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법 §105)
-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법 §106)
- 정당의 사무소·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 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요구·수령하거나 알선할 수 없음.

8)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2012. 3. 대검찰청)

-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 후보자가 관할 구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대선 30인)는 1만원 이하의 식사료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68)

- 주 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와 표지물(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을 착용할 수 있음.
- 종 류 :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크트, 그 밖의 소품
- 규격 또는 금액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윗 옷 : 개당 단가 30,000원 이내
 - 표찰, 수기, 마스크트,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3) 거리인사에 의한 선거운동 (법 §10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방 법
 -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보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손가락 활용 등)을 할 수 있음.
 -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선거사무관계자(회계 책임자 포함)는 선관위가 배부하는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함.

4)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법 §106)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11. 27.~12. 18.)
- 장 소 :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방 법 :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

2] 주요선례

1)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중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9조 등에 위반됨.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일이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없이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무방함.
- 선거일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피켓이나 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다만, 호별방문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이 없는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무보수 선거운동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후보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그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정당·후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2004. 3. 25.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008. 7. 3. 회답,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행위 및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08. 3. 17. 회답)
- 선거일에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오늘 선거일입니다. 기호○번 □□□후보에게 귀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2. 15. 선고 2011고합172)

2)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 1인이 수개의 어깨띠(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사용)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996. 3. 21. 회답)
- 어깨띠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정당명 외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견·정책, 선전구호 등을 게재하는 행위 (1996. 3. 21. 회답)
 - ⇒ 다만, 법 제84조·제88조·제250조·제251조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어깨띠 제작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행위 (2006. 2. 13. 회답)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센티미터, 20센티미터 이내)로 제작·사용하는 행위 (2006. 4. 26. 회답)
- 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콜라텍·7080라이브카페·나이트클럽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010. 3. 29. 회답)
 - ⇒ 다만, 확장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그 업소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에 정당명,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그림 등을 삽입하거나 정당·후보자가 기부행위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용 모자·티셔츠를 구입·제공하는 행위 (2005. 10. 12. 회답)
- 선거운동을 위한 모자·티셔츠의 외관·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2006. 3. 22. 회답)
- 후보자가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아예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10. 2. 5. 회답)
- 섬유·고무류 기타 재질로 사람 모양, 지역상징물, 동물 모형의 마스크트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10. 4. 8. 회답)
-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네온보드를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2012. 2. 15. 회답)
-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휠체어 등 보조기구에 표지물을 설치하는 행위 (2010. 4. 23.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어깨띠에 휴대용 확장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2006. 3. 22. 회답)
-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LED 홍보판에 동영상을 표출하거나, 통상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복합 LED 홍보판을 사용하는 행위 (2010. 2. 23. 회답)

3) 거리인사에 의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원 6명이 한조가 되어 13개 동을 순회하면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유세차 옆에서 음악에 맞춰 단체울동을 하는 행위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이 1조가 되어 공연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장구와 북을 치면서 거리를 행진하거나, 기타와 휴대용 봉고를 치면서 밤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단순한 바퀴 돌고 나가는 행위 (2008. 3. 25.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1톤 트럭에 후보자의 선거운동 로고송인 ‘다함께 차차차’, ‘뽀뽀뽀’ 등의 개사곡이 녹음된 녹음기를 장착한 다음 확성기를 통하여 가두방송을 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인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드립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 후보의 명함을 배부하게 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연설 중에 성명을 알 수 없는 50여명에게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서 흔들어 달라”면서 불꽃놀이 용품을 나누어 주고, 이들은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 흔들면서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게 한 행위 (부산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고합577)

4)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등 선거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철역에서 1.4톤 화물차량에 확성장치를 1대 설치한 다음 “사랑은 아무나 하나”의 가사를 “기호 4번 □□□, □□□”등으로 바꾼 로고송을 방송하면서 전철역부터 구청 사거리까지 3km 가량을 운행하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4. 6. 25.선고 2004고합223)
- 30여명을 선도하여 도로 양측으로 줄을 지어 따라 오도록 한 후 수십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이름을 선창하고 선거사무원들은 후창하는 방법으로 연호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 6. 13.선고 2012고합21)

투표참여 권유 활동 (법 §58①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 다만, 호별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할 수 있는 사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가 그 명의로 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범위에서 별도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2012. 3. 21. 회답)
- 정당이나 후보자가 그 명의로 법 제58조제1항제5호의 범위에서 신문이나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2012. 3. 21. 회답)
 -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시설물·인쇄물·광고의 수량 또는 횟수는 제한되지 아니하나, 후보자의 사진·기호를 게재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90조·제93조·제94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됨.
-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 없는 문구를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예 :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합시다’, ‘투표는 국민의 힘! 신나는 투표날 12.19’)
- 자신이 단순히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
- 정당대표자·후보자 또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전송하는 자가 투표소 밖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 ⇒ 당원이 대가를 받고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
 -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참여 권유내용보다 강조하거나 기호·사진이나 정강·정책 또는 선거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불가
-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2012. 3. 29. 회답)
- 선거일에 선거사무소나 정당선거사무소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는 행위 (2012. 3. 29. 회답)
 - ⇒ 이 경우 투표참여 권유를 위하여 소요된 전화회선 설치 등의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선거일에 후보자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2012. 3. 20. 회답)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천하여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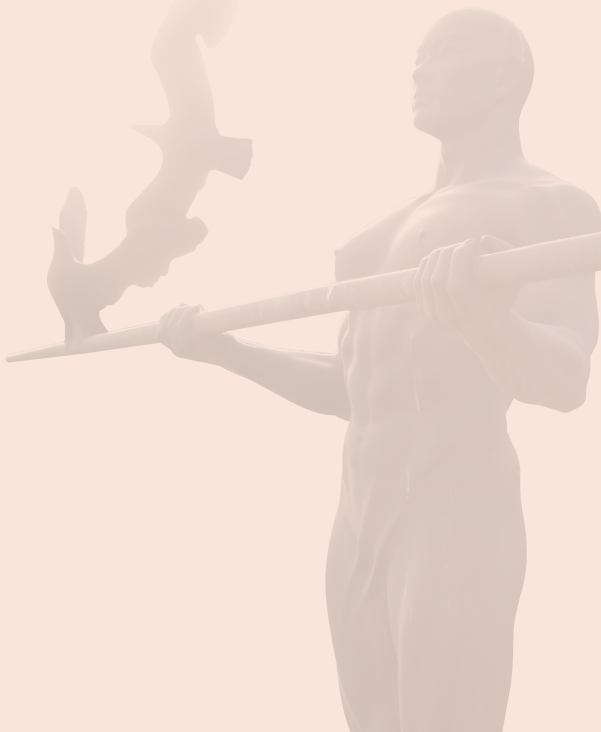
- 기표소내에서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또는 기표한 후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기호·사진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 또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인쇄물 등을 활용하는 행위
-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 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가능
- 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에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의 거주·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계층을 대상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Ⅱ . 기간별 주요 제한 · 금지 행위

- | | |
|--------------------------------|-----|
| 1. 상시 제한 · 금지행위 | 69 |
| 2.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 금지행위 | 96 |
|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 금지행위 | 108 |
| 4.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 금지행위 | 113 |
| 5. 선거기간 중 제한 · 금지행위 | 118 |
| 6.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 금지행위 | 141 |





II.

기간별 주요 제한·금지행위

1. 상시 제한·금지행위

가. 기부행위 제한·금지 (법 §112 ~ §117)

1 법규요약

1 기부행위의 개념 (법 §112)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주체별 제한내용 (법 §113 ~ §117)

조문	주 체	제 한 기 간	주관적 요 건	제 한 내 용
§113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상 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 금지
§114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 준비위원회 포함)·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선 거 기간전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 거 기간중	해당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115	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116	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117	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 하는 행위
 -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000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등 3,000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 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0,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정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자당의 당헌 등에 따라 대통령 선거 종료시까지 해당 정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정당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의 대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10,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약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제외함.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대선의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 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30인임.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가족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까지 후보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 제외
- 정책토론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관계시식·

현관식에 참석한 정당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포상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짠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함)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직무상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 상담행위
-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을 제외함)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기타 행위

- 법 제112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함으로써 후보자의 기부행위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달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6. 3. 22.선고 96도347)
-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

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금품 또는 이익 등의 사실상의 출연자에 한정되지 않음.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라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가 됨.
-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다대할 필요는 없으며, 행위자가 기부한 물품을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교부한 것만으로도 기부행위가 성립함.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2005. 6. 25. 회답)
- 정당이 청소·빨래·이발·목욕·건강체조·노래·집수리·반찬 만들어 주기 (반찬재료를 준비하여 만들어 주는 경우를 제외함) 등 당원들의 역무를 제공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2005. 12. 16. 회답)
 - ⇒ 그 범위를 벗어나 쌀·생필품·음식물·재료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에 위반됨.
-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재해구호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속 당원에게 교통이 불편한 장소로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008. 1. 31. 회답)
-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에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2004. 8. 18. 회답)
- 입후보예정자가 관할구역내의 각종 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자연보호, 주부환경연합회 기타 시민단체) 등이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2~3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2004. 12. 22.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와는 별개인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준 행위 (대법원 2006. 4. 27.선고 2004도4987)
- 범◇◇하나로연합의 사무실 겸 선거사무소로 쓰는 사무실 안에서 그 사무실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20명 이상 사람들에게 떡국, 국수 등 식사를 제공한 행위 (대법원 2007. 2. 9.선고 2006도741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는 말과 함께 병원비 및 약값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행위 (대법원 2007. 3. 16.선고 2007도617)
-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목적으로 해외방문시 기부행위 상대방인 동행 취재기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치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2007. 6. 8. 회답)
- 지방의원이 선거구민 12명의 버스운임료를 부담하여 당원교육행사에 참석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 7. 26. 선고 2012고합48)
- 정치인팬클럽 창립대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락, 과일, 과자 등을 제공한 행위 (대법원 2012. 4.20.선고 2012도3200)
-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9. 19.선고 2012고합32,68)
- 선거사무원이 사용한 차량의 유류비 보상 명목으로 현금 또는 계좌입금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 (대전고등법원 2012. 7. 4.선고 2012노157)
- 입후보예정자의 친구가 음식점 내에서 제3자인 손님들에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입후보예정자의 출마사실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한 행위 (제주지방법원 2012. 7. 27.선고 2012고합135)
- 후보자의 동창이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상대후보의 비리나

약점 등 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제주지방법원 2012. 8. 17.선고 2012고합194)

- 전직 통장모임의 회장이 해당 모임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그로 하여금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울산지방법원 2012. 9. 5.선고 2012고합335)
-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불러모아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있는데 지역발전을 가져올 분이니 도와달라'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인천지방법원 2012. 6. 22.선고 2012고합489)

나.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금지 (법 §250·§251)

① 법규요약

1) 허위사실공표죄 (법 §250)

○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함.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성립함.

2) 후보자비방죄 (법 §25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에 성립함.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②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0. 4. 25.선고 99도4260)
-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표된 사실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7. 3. 15.선고 2006도8368)
- 법 제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함. (대법원 2007. 3. 15.선고 2006도8368)
-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연설을 하거나,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신문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된 경우도 ‘공표’에 해당됨. 또한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책임을 져야 함.

-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별할 수 없음.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 6138)
- 후보자비방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유포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 후보자비방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250조제1항 중 비정규학력의 공표는 “게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서 연설 중 후보자의 비정규 학력을 사실대로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공표하는 행위 (2004. 1. 16.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법정선거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는 행위 (2004. 1. 16. 회답)
- 후보자 명함, 선거공보에 비정규학력을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한 행위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 정규학력외의 수확한 경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화기 등에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 (1998. 5. 13. 회답)
- 후보자가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39)
- 연설내용이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에 해당하는 행위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다. 사조직 및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법 §87·§89)

① 법규요약

1) 사조직의 설치 금지 (법 §87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2)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법 §89①)

누구든지 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주요 선례

1) 사조직의 설치 금지

판 단 기 준

- 법 제87조제2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

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설사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에 해당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 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반대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임.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782 판결)
- 선거운동기간 전 단체가 단독 또는 합동으로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그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거나,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 또는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나, 그러한 내용을 신문광고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법 제254조·제90조·제93조에 위반됨. (2000. 3. 22. 회답)
- 회원총회에서 선거기간전에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당선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무방함. (2004. 1. 9. 회답)
-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등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벽보·선거공보에 지지·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대담 지원연설, 전화·전자우편(e-mail)·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004. 1. 9. 회답)
 - ◆ 단체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정기간행물에 회원의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회원의 입후보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됨.

- ◆ 회의의 성격·참석범위·진행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있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토론회나 집회의 개최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9조·제103조에 위반됨.
 -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함.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 회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의하여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하나, 별도의 유인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때에는 그 행위 시기나 방법에 따라 법 제93조·제103조·제254조에 위반됨. (2002. 6. 3. 회답)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지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과 기자회견의 시기·내용·방법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7조에 위반됨. (2011. 10. 10.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 대학(교)의 학생회가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알리기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행위 (2010. 5. 12. 회답)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04. 11. 16. 회답)
- ⇒ 이 경우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거나 금품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소속회원 중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해당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회원용 소식지에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들에게 단순한 선출사실을 알리는 행위 (2002. 3. 11. 회답)
 - ⇒ 소식지의 발행시기·수량·내용 등으로 보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정도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됨.
- 노동조합이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에서 지지할 정당을 결정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 (2006. 4. 28. 회답)
-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가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2010. 4. 12. 회답)
 - ⇒ 다만,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하여 지지할 후보자를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법 제90조·제93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설치하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하는 행위 (2005. 9. 30. 회답)
 - ⇒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설립된 팬클럽인 경우에도 그 운영경비를 모금하면서 저금통에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팬클럽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거나 모금과정에서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법 제90조·제254조에 위반됨.
-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포럼을 설립하는 행위 (2007. 2. 26. 회답)
 - ⇒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포럼의 대표가 되거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단순히 강연을 듣는 것은 무방함.

- 포럼이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를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2007. 2. 26. 회답)
-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에 총회 등 여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지지를 결의하는 행위 (2007. 11. 21. 회답)
- 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2010. 4. 2. 회답)

2)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판 단 기 준

- 어떤 단체 등이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입후보예정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유사기관에 해당함.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화홍보를 하는 행위 (1995. 1. 27. 회답)
 - ⇒ 다만,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자원 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9조에 위반됨.
-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 단체의 사무소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구성원의 연락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해당 단체의 회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00. 4. 5. 회답)
 - ⇒ 다만,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89조제1항에 위반됨.
-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의 단일화모임 구성 등

- ◆ 정당소속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무소속 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
 - ⇒ 다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7조제2항·제89조·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됨.
- ◆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가 단일화를하기로 합의한 후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모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 단일화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는 행위
 - ⇒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그 밖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퇴한 정당의 후보자가 단일후보로 확정된 타당의 후보 진영에서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2009. 9. 25.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를 지지하는 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을 연습하는 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1996. 8. 8.선고 96고합26)
-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 (대전고등법원 2006. 10. 13.선고 2006노344)
- 후보자추천권한이 없는 단체가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공모한 특정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동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 (2001. 11. 10. 회답)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2009. 12. 28. 회답)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 시키면서 ▽▽▽ 명의의 휴대전화 2대로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8747)

라. 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법 §95 ~ §98)

1 법규요약

1)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금지 (법 §95)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음.

⇒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2)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법 §96)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3)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법 §97)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법 제114조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해당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음.

4)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제한 (법 §98)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2 주요 선례

1)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금지

판 단 기 준

-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의미하고(제95조제2항), 단순한 선거 관련 뉴스나 객관적인 사실보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69)
- ‘기사’는 보도와 논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말하고, ‘논평’이란 정당·후보자 등의 정강·정책·정견·언동 등을 대상으로 이를 논의·비판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 ‘통상방법 외의 방법’이라 함은 그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 법 제95조에 규정된 신문·잡지 등 간행물은 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 기관·단체·시설에서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 오던 정규 기관지도 아닌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호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05. 5. 13.선고 2004도395, 대법원 2005. 5. 13.선고 2004도3385)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가 그 업체가 발행하는 사외보에 선거와 관계없는 내용의 자신의 칼럼을 게재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배부하는 행위 (1994. 6. 25. 회답)
- 출판사가 출판하려는 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취재하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배부하거나 출판하려는 책에 포함시키는 행위 (2007. 11. 29. 회답)
 - ⇒ 다만, 그 내용이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함.
- 단체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발행하는 기관지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의 입후보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여 종전의 방법과 범위에서 배부하는 행위 (2010. 4. 21. 회답)
 - ⇒ 다만, 경력을 게재하여 입후보 지역의 산하 조합 등에 배부하는 것은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행위 (대법원 2000. 12. 8.선고 2000도4600)

- 정당의 중앙당이 해당 정당의 정책방향과 활동상황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행한 기관지를 소속 당원들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2005. 10. 28. 회답)

2)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판 단 기 준

- 법 제96조에서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해당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보도 또는 논평은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한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가리킴.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할 수 없는 사례

- 신문사 발행인겸 기자가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가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선관위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발을 하였다는 허위보도와 함께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여 배부한 행위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 7. 19. 선고 2002고합240)
- ○○신문 제1면 머릿기사로 “◇◇◇후보 가상대결서 압승”이라고 게재하게 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논평한 행위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3)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

판 단 기 준

- 법 제97조의 ‘선거에 관한’이란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이 선거와 관련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또한

선거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결과 언론매체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보도나 논평을 했는지 여부는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 법 제97조제1항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됨.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할 수 없는 사례

- OO신문사의 신문편집국장이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는 자들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위 신문에 동인들이 해당 선거의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배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136)

4)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언론기관이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의회의 의정활동을 중계방송하는 행위 (2002. 8. 19.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중계유선방송의 자막방송으로 후보자들의 경력 및 공약을 고지하는 행위 (1995. 6. 10. 회답)
- OO노총이 대통령선거에서 정책연대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라디오 광고를 하는 행위 (2007. 11. 19. 회답)
- 종합유선방송사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소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행위 (2012. 1. 16. 회답)

마. 선거일 후 답례 금지 (법 §118)

1 법규요약

-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 기 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법 제79조제3항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는 무방함.
 -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2012. 12. 20. ~ 2013. 1. 1.)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함.

2 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당선의 감사인사 서신으로서 해당 선거에 관하여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지역구 주민(매세대)에게 배부하거나 당선사례 내용의 현수막·벽보를 첩부·게시하는 행위 (1996. 4. 17, 2007. 12. 19.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일반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맥주, 삼페인, 과일, 떡 등 270,000원 상당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466)

2.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행위

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법 §90)

① 법규요약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6. 22. ~ 12. 19.)까지
- 제한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콧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함. (정당법 제37조)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표에서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집회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직무상·업무상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 민속절·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 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 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 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행위의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면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피고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선전물’이라 함은 법 제90조에 규정된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묘사되거나 특징 등이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총칭하는 것으로 봄. (대법원 2004. 3. 11.선고 2003도6650)

- 특정 물건의 본래 용도가 사적인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이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일반 공중에게 배부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 그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면 그 물건은 법 제90조의 광고물 또는 법 제256조제2항 제1호아목의 선전물에 해당함.
- '상징물'이란 후보자 개인의 외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후보자의 사고와 주장을 표상할 수 있는 물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후보자의 외형적·내면적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일반 공중에게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말함.
- 정당의 정책 등 홍보활동 (2010. 2. 26. 회답)
 - ◆ 정당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명의(로고 포함)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당원모집 및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홍보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함.
 - ◆ 정당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당명개정을 위한 현상공모 고지, 정책토론회 개최 사실 홍보를 위한 정당명의(로고 포함)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법 제90조에 위반됨. 다만,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그와 같은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무방함.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정책·정치적 현안 홍보
 -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주요 지역 정책인 “별내 광역 전철 조기 확정”의 홍보·축하 현수막(정당 명칭 표시)을 게시하는 행위
 -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주요 정책 홍보내용을 국회의원 사무실(건물외벽)에 정당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국회의원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법 제90조·제254조에 위반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하면서 부수적으로 정당의 정책강연회 개최를 고지하는 행위 (2010. 2. 26. 회답 참조)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이용하여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강·정책을 홍보하는 행위 (2010. 1. 25. 회답)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책홍보차량(정책과 주장을 게재한 현수막 부착, 확장장치, LED, VTR 등 설치 차량)을 이용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 (2010. 2. 8. 회답)
 -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장장치 등 홍보시설물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을 하는 등 행위 양태나 연설내용이 정당의 정책홍보라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91조·제254조 그 밖의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됨.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LED 영상 차량으로 홍보활동을 하거나 집회 형태로 연설회를 개최 하는 행위 (2011. 4. 25. 회답)
 -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91조·제254조 등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후보자가 자신의 상징구호로 사용하고 있는 별명(포청천)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하는 행위 (1995. 6. 23. 회답)

- 연설회장 주변에서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넣은 문구를 붙여놓거나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는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 (1995. 6. 23. 회답)
-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후원활동의 일환으로 배부·판매되고 있는 돼지저금통은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전에 “희망돼지”라는 명칭과 “보통사람들이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선거구호 및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정당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판매하는 것은 법 제90조에 위반됨. (2002. 12. 2. 회답)

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법 §93①)

① 법규요약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6. 22. ~ 12. 19.)까지
- 제한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 금지행위의 예외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 배부 등이 금지되는 문서·도화 등에 게시된 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여 비판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음.
-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른 후보자 및 정당을 제외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시기·양태에 따라 법 제82조의7·제93조제1항·제254조에 위반됨. (2012. 1. 13. 의결)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 등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배너광고하는 행위 (2010. 2. 22. 회답)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라디오 광고를 하는 행위 (2010. 5. 12. 회답)
- 「방송법」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치광고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당의 정책을 라디오 광고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2011. 5. 24. 회답)
- 정당·예비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 ◆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 ◆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 또는 배부하여 참가자가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제출하게 하는 행위 (2009. 3. 31. 회답)
- ⇒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위반됨.

- 단체가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여 언론기관에 자료로 제공하거나, 인터넷·컴퓨터 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또는 해당 단체가 발행·배부하는 기관지에 게재·배부하는 행위 (2000. 1. 20. 회답)
- ⇒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경력·정책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수록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이를 일반선거구민(유권자)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목적이 없더라도 법 제93에 위반됨.
- ⇒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는 가능함.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2007. 5. 31. 회답)
- 선거기간 중 일반 영화관에서 영화상영 전에 법 제70조의 TV방송 광고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상영하는 행위 (2007. 11. 12. 회답)
- 후보자 초청·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1996. 4. 3. 회답)
- 노조위원장 사무실 게시판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신문 기사를 확대복사하여 코팅한 것을 게시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고합736)

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사전신고 (법 §108③)

1 법규요약

- 신고대상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6. 22. ~ 12. 19. 18:00)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신고방법 :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함.

2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 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는 허용되나, 그 여론조사의 목적이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포털사이트의 뉴스페이지에 대선 특집페이지를 통하여 주요 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 형태로 그 지지율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공정하게 게시하는 행위 (2007. 5. 30. 회답)
-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고, 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 (2010. 2. 5. 회답)
- 언론기관이 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 출처를 밝혀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2010. 4. 16. 회답)
 - ⇒ 이 경우 그 출처를 밝히는 때에는 함께 공표해야 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밝혀야 함.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2008. 1. 28. 회답)
- 입후보예정자가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2008. 1. 28. 회답)

라.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제한 (법 §89②)

① 법규요약

- 제한대상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6. 22. ~ 12. 19.)까지
 - 주요내용
 -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음.
- ⇒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에 따른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음.

②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의미는 단체 등이 그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선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그 선전에 사용된 특정 문구나 기호, 이미지, 영상 등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함으로써 일반 선거구민들이 그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선전행위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 등의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96)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행위

가.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법 §93②)

① 법규요약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9. 20. ~ 12. 19.)까지
- 주요내용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선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②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에 서적 광고는 포함되지 아니함.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 없이 그 명의로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2008. 6. 3. 회답)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기독교-TV 간증을 방송하는 행위 (2004. 1. 16. 회답)
 - ⇒ 다만,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방송출연 제한에 관하여는 선거방송 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의 규정을 참조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기업이 제조한 물품 등의 판매를 위한 제품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2004. 1. 16. 회답)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홈쇼핑 제품을 광고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2004. 1. 16. 회답)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신앙간증·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2004. 1. 31. 회답)
-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도서를 광고하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기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행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243)

나.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 (법 §103·§111)

① 법규요약

1)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법 §103⑤)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9. 20. ~ 12. 19.)까지
- 주요내용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2) 의정활동보고 금지 (법 §111)

- 주 체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9. 20. ~ 12. 19.)까지
- 주요내용 : 집회·보고서 등 일체의 의정보고활동을 할 수 없음.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보고를 하는 경우 상시 가능함.

② 주요 선례

1)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판 단 기 준

- 후보자가 직접 저술한 저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 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임. 이 경우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일반 저서의 사인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개최가 제한되는 출판기념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출판기념회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사인회를 개최하는 행위 (2010. 4. 28. 회답)
- ⇒ 다만, 저서 사인회의 개최시기·횟수·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인 저자의 성명과 사진이 책표지에 게재된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 (2006. 2. 13.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인 저자의 사진을 부각시키고 정치적 경력이나 선거구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 내용의 서적광고를 하는 행위 (1995. 4. 3. 회답)
- 선거일전 90일이후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광고하는 행위 (2002. 2. 9. 회답)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도서를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제공하는 행위 (2011. 9. 27. 회답)

2) 의정활동보고 금지

판 단 기 준

- 법 제111조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운동의 방법과 횡수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공선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2)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국회의원이 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2007. 8. 14. 회답)
- 인터넷 언론사, 중앙당, 지역위원회의 홈페이지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토론방 등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정보고서를 게시하는 행위 (2005. 5. 1. 회답)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2011. 11. 28.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1995. 12. 27. 회답)

4.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행위

가.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여론조사 (법 §108②)

① 법규요약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10. 20. ~ 12. 19.)까지
 - 주요내용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 다만,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가능함.

②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여론조사의 표본선정과 질문내용

-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도 통상적인 범위의 표본을 선정하여야 하는 바,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를 위해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각각 2,000명씩을 대상으로, 2009년 울산북구 국회의원재선거시에는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 단일화 대상 후보에 대한 지지도 또는 적합도를 묻는 질문은 무방하나, 질문내용 구성의 적법성여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제 투표와 유사한 방법이나 후보자·정당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경위나 결과의 공표여부를 불문함.

할 수 있는 사례

-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성명·학력·경력·연령이 녹음된 설문용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1995. 6. 1. 회답)
 - ⇒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만을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론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됨.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2007. 11. 19. 회답)
 - ⇒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4항·제5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과 피의사실을 적시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1999. 4. 13. 회답)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2010. 4. 9. 회답)
 - ⇒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참고하기 위하여 또는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 추천 입후보예정자의 적합도 및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공동명의로 실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여론조사의 설문사항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종국적으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 856)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86②)

1 법규요약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10. 20. ~ 12. 19.)까지
-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방함.

2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법 제86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2005. 6. 30.결정 2004헌바33)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 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 다만,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는 지지연설을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에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개소식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일전 60일 이후 개최되는 창당대회에서의 타 정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상축사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 찾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에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5.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행위

가.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법 §84)

① 법규요약

- 주 체 : 무소속후보자
- 금지행위 :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 ⇒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거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함.

②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정당표방은 무소속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정당표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 지리적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특정 정당이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정당이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함.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314)
- 지지·추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정당으로부터 후보자에게로 향해진 것을 말하므로,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3648)

할 수 있는 사례

- 무소속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과거 정당활동경력 및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의 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1995. 4. 26. 회답)
-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에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995. 4. 26. 회답)
- 무소속후보자가 현수막에 '○○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고 기재한 행위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3648)

할 수 없는 사례

- 무소속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정당대표자의 추천사나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의 손을 들어 주는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1995. 5. 4. 회답)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간부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하는 행위 (1997. 7. 4. 회답)

나.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법 §88)

① 법규요약

- 주 체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금지행위 :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음.

② 주요 선례

정당 등의 무소속후보자 지원

- 정당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무소속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물에 무소속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와 함께 활동하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 ⇒ 다만, 선거홍보물에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독립된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거나 무소속후보자를 당선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등 선거구가 겹치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88조에 위반됨.
- 무소속후보자의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은 그 후보자가 작성하여야 함.
- 정당이 법 제59조제2호·제3호·제82조의4·제82조의5 및 제109조를 준수하여 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무소속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함. 이 경우 정당이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행한 활동에 소요된 경비는 해당 정당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음.

⇒ 다만, 법 제69조의 신문광고, 제70조의 방송광고, 제82조의7의 인터넷 광고는 무소속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 정당의 당사나 정당선거사무소에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경우 정당의 당사나 정당선거사무소와 구획하여 별도로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은 무방함.

○ 무소속후보자가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 명함과 어깨띠 등 제작·구입 비용은 무소속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당이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됨.

⇒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소속 후보자에게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없음.

⇒ 정당이 당비를 무소속 후보자에게 대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됨.

○ 정당의 당원이 무소속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가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되는 것은 무방함. 이 경우 법 제88조 또는 제205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됨.

⇒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간에 또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에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나 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 등이 단일화된 후보자나 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의 간부나 구성원 또는 연설원이 되는 것은 무방함.

○ 정당이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음식물(다과·떡·김밥·주류 포함)을 제공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 또는 제135조에 위반됨.

-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위해 정당의 차량에 선거벽보 등을 첩부하여 운행하거나 차량유지비(기름값) 등을 지원하는 경우 법 제91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됨. (2011. 10. 14. 회답)
-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사퇴한 때부터 그 정당 소속 지역 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는 「정치자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007. 12. 6. 의결)
- 법 제138조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과 같은 법 제138조의2에 따른 정책공약집에는 무소속후보자의 사진 등 그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며, 법 제139조에 따른 정당기관지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정당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 제9장이 적용되는바, 법 제137조·제138조·제138조의2·제139조·제145조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무소속후보자의 지원활동을 할 수 없음. (2011. 10. 7. 회답)
-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정당이 행한 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해당 정당의 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하며, 법 제119조제1항 제4호와 같이 후보자 등과 통모하여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방송·신문·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법 §92·§94)

① 법규요약

1)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법 §92)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기간 중 (11. 27. ~ 12. 19.)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법 §94)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기간 중 (11. 27. ~ 12. 19.)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② 주요 선례

할 수 없는 사례

- 일간신문에 선거구민들에게 박○○의 석수3동 재건축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알리고, 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후보에게 드리는 공개질문서”라는 제목으로 선거기간 중 신문을 통하여 광고를 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2002. 9. 27.선고 2002고합646)

라. 구내방송·녹음기·타연설회 등 금지 (법 §99·§100·§101)

① 법규요약

1)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법 §99)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기간 중 (11. 27. ~ 12. 19.)
- 금지행위 :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행위

2) 녹음기 등의 사용 금지 (법 §100)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기간 중 (11. 27. ~ 12. 19.)
- 금지행위 :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기나 녹화기 (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타연설회 등의 금지 (법 §101)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기간 중 (11. 27 ~ 12. 19.)
-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② 주요 선례

1) 타연설회 등의 금지

판 단 기 준

- 선거기간 중에 선거와 무관함을 표방한 집회의 개최라도 그 집회에서 선거에 관한 연설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반선거구민 상대의 대중집회를 연속 또는 순회 개최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봄. (1991. 3. 6. 의결)
-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열차, 전동차, 선박, 여객자동차, 항공기 등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관·단체·회사 등이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함.
- 선거기간 중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한 연설회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며, 이 경우 연설회 자체가 당초에는 선거와 무관함을 표방하였더라도 선거에 관한 연설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 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연락소에 후보자의 프로필 및 정견등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비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VTR을 통해 동 장소에서 방문자들 대상으로 상영하는 행위 (1995. 4. 6. 회답)
-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와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되어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강연 또는 연설을 하는 행위 (1995. 6. 9. 회답)
- 케이블 텔레비전 여성 채널인 동아텔레비전이 방송프로그램공급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 목적 범위안에서 중앙당의 여성국장을 참여하게 하여 정당의 여성에 관한 정강·정책에 관한 대담·토론을 행하게 하는 행위 (1995. 6. 14. 회답)

⇒ 다만, 선거기간중에 방송프로그램공급과 무관하게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정책등을 발표하게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법 제101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지하철방송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공약·활동상황에 대한 인터뷰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2007. 3. 28. 회답)
- 사회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공약평가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7. 9. 3. 회답)

마. 각종집회 등의 제한 (법 §103)

1 법규요약

-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 (11. 27. ~ 12. 19.)
- 제한행위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2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고, 그 모이는 인원수의 다수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특정한 공동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위의 집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 선거기간 중이라도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선거기간중이지만 즉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시급성을 갖춘 경우로 봄. 다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 중 새마을운동협의회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2007. 10. 30. 회답)
-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총기탈취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 몽타주 배부 및 주민신고요령 등 홍보를 위하여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7. 12. 19. 회답)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언론기관이 동 행사를 취재·보도하는 행위 (1999. 8. 2. 회답)
- 선거기간중이라도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2002. 11. 14. 회답)
 - ⇒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법 제9조·제86조·제103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할 수 없는 사례

-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중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 나누기 행사나 시·군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7. 10. 30. 회답)
-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현시가 보상대회”를 개최하여 위 집회 참가자 70여명과 같이 후보자인 현 시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2002. 11. 22. 선고 2002고합741)
- 한국자유총연맹이 전국자유수호옹변대회 예선 및 본선대회를 선거기간 중 개최하는 행위 (2002. 4. 15. 회답)
- 선거기간 중에 입후보예정자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적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1994. 10. 27. 회답)

- ⇒ 이 경우 회원단합대회 또는 경로잔치행사를 선거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임원을 위하는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사로 보아야 함.
- 정당의 유급사무처 당직자 일동이 선거기간 중 선거구내 일정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2011. 10. 7. 회답)

바. 연설회장에서 소란행위 등 금지 (법 §104)

1 법규요약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장소 : 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
- 금지행위 :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음.

2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연설 등의 내용을 알아듣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연설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말함.

할 수 없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교 미쳤다. ◇◇◇ 미쳤다.”라고 소리치며 토스트와 250ml 우유팩을 선거유세차량을 향해 집어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6.선고 2008고합945)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접근한 후 선거운동원 2인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 있던 연설용 계단을 밀치고, 연설용 앰프를 끄려고 한 행위 (부산지방법원 2006. 8. 1.선고 2006고합332)

사.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운동의 제한 (법 §106·§107)

① 법규요약

1) 호별방문의 제한 (법 §106)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상시)
 -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2)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법 §107)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② 주요 선례

1) 호별방문의 제한

판 단 기 준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든 이유만으로 가별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함.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 법 제106조제2항의 “점포”라 함은 가게를 별인 집 즉, 가갯집을 말하는바, 상가가 점포와 다른 용도의 부분 즉, 주거나 사무실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면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점포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1994. 12. 22.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106조제2항에 규정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전철역 지하상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하는 행위 (2002. 7. 4.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아파트 11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 8. 30. 선고 2002고합308)
- 음식배달원 등이 고객(유권자)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정 후보의 소형인쇄물을 음식위에 놓았거나 전달한 행위 (1995. 5. 19. 회답)
-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내 병원의 병실 6개를 방문하여 입원환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 선고 2012고합86)

2)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판 단 기 준

- 법 제107조의 규정은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서명·날인을 구할 경우 서명·날인한 자가 스스로 한 서명·날인에 심리적으로 구속되어 결국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하는 것을 방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임. (서울지방법원 2003. 9. 4. 선고 2003고합576)
- 당초에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서명이나 날인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선전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봄.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모임이 단순히 특정인의 특별 사면 복권만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2000. 1. 20. 회답)
 - 국회의원이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학등록금의 결제관행의 개선방안을 찾고 앞으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2006. 2. 9. 회답)
- ⇒ 다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됨.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서명과정에서 입후보 예정자인 해당 국회의원의 선전행위가 부가되는 행위 (1995. 11. 7. 회답)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연판 등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2004. 4. 12. 회답)
- 노조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甲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2010년 도지사 선거 시 甲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생산부 소속 직원 19명에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서명을 받은 행위 (전주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고합68)

아.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법 §109)

① 법규요약

1)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 (11. 27. ~ 12. 19.)
- 금지행위 :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의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협박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하는 행위

②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법 제109조는 서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인쇄서신·복사서신·대필서신·자필서신 등이 그 종류와 양을 가리지 않고 작성·발송됨으로써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후보자가 타인을 대량으로 고용하여 서신을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등 후보자들 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과 불공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임. (헌법재판소 2007. 8. 30.결정 2004헌바49)

- ‘서신’에는 자필서신은 물론 인쇄·복사서신도 포함되며, ‘전기통신의 방법’은 전화·전자우편·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함.
- 스마트 휴대폰에 총 1,000명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발송방법은 20명씩 선택하여 전송버튼을 누르면 같은 내용으로 20명에게 동시에 발송되고 이를 순차적 방법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에서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 이하의 수신대상자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때에는 전송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2. 2. 16.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음성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008. 3. 3. 회답)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용량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20개 문자메시지를 넘어 1,000개 이상을 동보발송하는 행위
 -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음.
- 1,000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내장된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부재자선거인들에게 ‘甲번호사께서 4월 9일 총선에 기호○번 ◇◇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 甲후보를 선택하시면 우리나라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라는 내용의 서신 600여통을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부재자신고인 600여명에게 발송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2008. 7. 25.선고 2008고합279)

자.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제한 (법 §137~§145)

① 법규요약

1)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제한 (법 §138)

○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 (11. 27. ~ 12. 19.)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따른 입장을 인쇄물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음.

○ 제한내용

◆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종 류 :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이내, 16면이내

◆ 배부수량 :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을 제외 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제출시기 : 배부전까지

◆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정당과

◆ 제출수량 :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2) 정책공약집의 배부 제한 (법 §138의2)

○ 주 체 :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

○ 시 기 : 언제든지

○ 발간횟수 : 제한 없음.

○ 게재내용 등

- ◆ 정책공약집은 도서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 ◆ 자당의 정책과 선거공약
 - ⇒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 정책공약집 앞면에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은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배부방법

-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소(선거연락소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에서의 판매
 -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정책공약집 제출

- ◆ 시 기 : 발간 즉시
- ◆ 제출처 : 발간 주체(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따라 중앙위원회(정당과) 또는 시·도위원회
- ◆ 수 량 : 2권(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3)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법 §139)

○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발행횟수

- ◆ 통상적인 주기에 의하되,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
- ◆ 증보·호외·임시판을 포함하며, 배부지역에 따라 게재내용 중 일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봄.

-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중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으로 배부
 - ⇒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철부·게시·살포 또는 민원실·마을회관·아파트입구 등 비치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 기관지 제출
 - ◆ 제출시기 : 발행 즉시
 - ◆ 제출처 : 중앙위원회 정당과
 - ◆ 제출수량 :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4) 당원집회 개최 금지 (법 §141)

- 금지기간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11. 19.~12. 19.)까지
- 금지내용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5) 당원모집 등 금지·제한 (법 §144)

- 금지기간 : 선거기간 중 (11. 27.~12. 19.)
-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가 가능함.

□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정당활동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법 제137조)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법 제138조)
- 정당의 당원집회 (법 제141조)
- 당원모집 등 (법 제144조)

2) 주요 선례

1)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중앙당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강·정책홍보물의 일부지면(1~2면 정도)을 지역판으로 할애하여 게재내용을 달리 작성하는 행위 (1995. 4. 7.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집회에 사용한 교육용 교재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1999. 12. 24. 회답)

2) 정책공약집의 배부 제한

판 단 기 준

- 정책공약집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량·금액 등 판매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판매 수익금은 정당의 부대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2007. 10. 25. 회답)

할 수 있는 사례

- 정책공약집을 출판사에 위탁하여 제작·판매하는 행위 (2007. 10. 25. 회답)
 - 정책공약집의 여백을 이용하여 기업 등의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고 통상적인 범위의 광고료를 받아 정당의 부대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행위 (2007. 10. 29. 회답)
- ⇒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액수의 광고료를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5조에 위반됨.

3)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판 단 기 준

- 법 제1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기관지란 정당의 중앙당이 당해 정당의 정책방향과 활동상황등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994. 7. 8.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기관지에는 다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게재할 수 없을 것임. (2002. 11. 11. 회답)

4) 당원집회 개최 금지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를 당원집회 제한기간중에 개최하는 행위 (2007. 4. 23. 회답)
- 정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에서 사용할 로고송과 선거 유니폼을 공모한 후, 수상작을 가리기 위하여 응모자 등 제한된 범위안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부 평가회(경연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2007. 11. 15.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선거기간중인 4월 5일 식목일에 자연보호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반당원을 모이게 하는 행위 (2004. 4. 2. 회답)

6.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행위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법 §108①)

① 법규요약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12. 13. ~ 12. 19. 18:00)까지
- 주요내용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② 주요 선례

판 단 기 준

- 공표시기의 기준은 간행물에 표시된 발행일자가 아니라 일반 서점에 배포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실제 발행·배부일이 됨.

할 수 있는 사례

-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선거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1997. 12. 1. 회답)
- 「우세·백중우세·경합·추격」등의 언론사의 총선판세보도의 내용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단순히 각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또는 현지 분위기 등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행위 (2000. 4. 11. 회답)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금지기간 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하여 외국인에게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2008. 3. 14.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 인터넷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을 개설하고 네티즌이 후보자들의 최종 득표율을 예측하여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002. 10. 5. 회답)
- 국내 여론조사기관은 물론 외국의 신문·방송사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행위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록 :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표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012. 4. 23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7. 22부터 10. 2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9. 20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 20부터 12. 19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9. 20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10. 20부터 12. 19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0. 31부터 11. 9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11. 19에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11. 21부터 11. 25까지	수 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1. 25부터 11. 26까지	일 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 27	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법§33③
11. 29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 2까지	일	선거벽보 첨부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법§65⑤, 규§30④
12. 5까지	수	책자형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12. 5부터 12. 10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12. 6까지	목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10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12. 10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12. 12까지	수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12. 13부터 12. 14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12. 19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10장 법 11장
'13. 2. 27까지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발행 | 2012년 10월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의도지원단 (Tel. 02-780-2684~2685)

편집·인쇄 | 칼라터치 커뮤니케이션즈 (Tel. 02-2264-5461)

비매품

